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-681 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6월 9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

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평가위원회 비상설 운영으로도 위원회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비상설화로 전환하며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삭제(안 제14조제3항)
- 나.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3항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